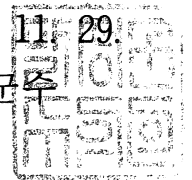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17
----------	-------

제출일자 : 2019. 11. 29.

제 출 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내실화와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 업무 및 권한을 발굴,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 및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 의뢰 전 사전협의(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9. 10. 18. ~ 11. 7.(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
7.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 의뢰 전 사전협의

제7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
5.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 의뢰 전 사전협의를 따른 의견제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1.~ 5. (현행과 같음) 6. <u>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u> 7. <u>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 의뢰 전 사전협의</u>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 -----. 1.~ 3. (현행과 같음) 4. <u>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u> 5. <u>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 의뢰 전 사전협의를 따른 의견 제출</u>

□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제 사무 처리 규칙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입법안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사전심사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부패영향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5조의 입법예고 종료 이후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 입법안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